##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11

발의연월일: 2020. 8. 12.

발 의 자:이규민·장철민·안규백

윤영덕 • 김승원 • 양기대

이용우 · 최종윤 · 이수진

김경만・홍기원・민형배

윤재갑 · 임호선 · 박성준

권칠승 · 홍정민 · 양정숙

장경태・박 정・송갑석

이성만 • 고영인 • 김회재

김주영 의원(2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하 매설 에너지 시설인 송유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전국 송유관의 약 97%가 2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송유관이 장기사용 중이며, 송유관에서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오염, 화재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실정임.

따라서 송유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설배관 피복손상탐 지 등 첨단장비와 선진 검사기법을 활용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도입 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조치가 필요한 송유관시설에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송유관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의2 및 제15조).

###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밀안전진단"이란 송유관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송유관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송유관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 송유관설치자등은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송유관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 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② 송유관설치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송유관에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송유관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기준·방법,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5. "정밀안전진단"이란 송유관 |
|                    |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송유관    |
|                    |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   |
|                    | 와 기술을 이용하여 송유관의   |
|                    |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   |
|                    | 아내는 것을 말한다.       |
| <u>&lt;신 설&gt;</u> | 제8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                    | 등) ① 송유관설치자등은 산업  |
|                    |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송유   |
|                    | 관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
|                    | 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정  |
|                    | 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                    | ② 송유관설치자등은 제1항에   |
|                    |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송  |
|                    | 유관에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
|                    |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   |
|                    |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  |
|                    |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③ 제1항에 따른 송유관의 정밀 |
|                    | 안전진단의 시기·기준·방법,   |
|                    |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

제15조(벌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안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신 설>

<신 설>

| 사항은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
|--------------|------------|
| <u> 정한다.</u> |            |

하나에 해당하는 -----

- 1.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을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자
- 3.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필요 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